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43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 2

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요 ····· 2

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인철의원안, 이건태의원안, 천하람의원안, 김선교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신동욱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정성호의원안, 김승수의원안, 정연욱의원안, 임오경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 7

Ⅰ. 개요

1.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43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5. 9.

(3) 회 부 일 : 2025. 5.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정 비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상콘텐츠 산업은 K-콘텐츠의 핵심 기반으로서 수출, 고용,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적·문화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특히 OTT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플랫폼 지출이 활발한 시점에서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창작 기반을 확대하고, 중소 제작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실질적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4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요

□ 법 제25조의6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30%를 세액공제함으로써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드라마·영화 등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법 제25조의6) 개요]

구분	내용
공제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 영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공제율	①(기본공제) + ②(추가공제) - ①: 대 5%, 중견 10%, 중소 15% - ②: 대·중견 10%, 중소 15% * 추가공제는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공제시기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영상콘텐츠 제작산업은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제조업 등과 달리 많은 설비투자가 요구되지 않고 제작비용의 상당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임. 따라서,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는 데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에 동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1)]

동 제도에 따라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제작비용은 기업규모에 따라 각각 5%(대기업), 10%(중견기업), 15%(중소기업)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10%(대기업·중견기업) 또는 15%(중소기업)의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종전에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음.

또한, 미국 등 거대 미디어·플랫폼 사업자와 중국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자들의 진출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1) 문화체육관광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16, p.3 참고

The Top, 이하 'OTT')를 공제대상에 추가하였음.

이후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에서 15%로, 중견기업의 경우 7%에서 10%로, 대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하도록 하는 등 공제율을 대폭 인상하였음.

한편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하였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1	0.8	1	1	2	2
법인세	169	309	319	257	251	256
합계	170	310	320	258	253	258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현행법 제25조의7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3%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산업 분야의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2]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되 자금 흐름과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부분과 자금관리 부분을 각기 다른 회사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함.[3]

통상 프로젝트의 개시와 함께 출범하여 프로젝트 완성과 더불어 해산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 사원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됨.[4]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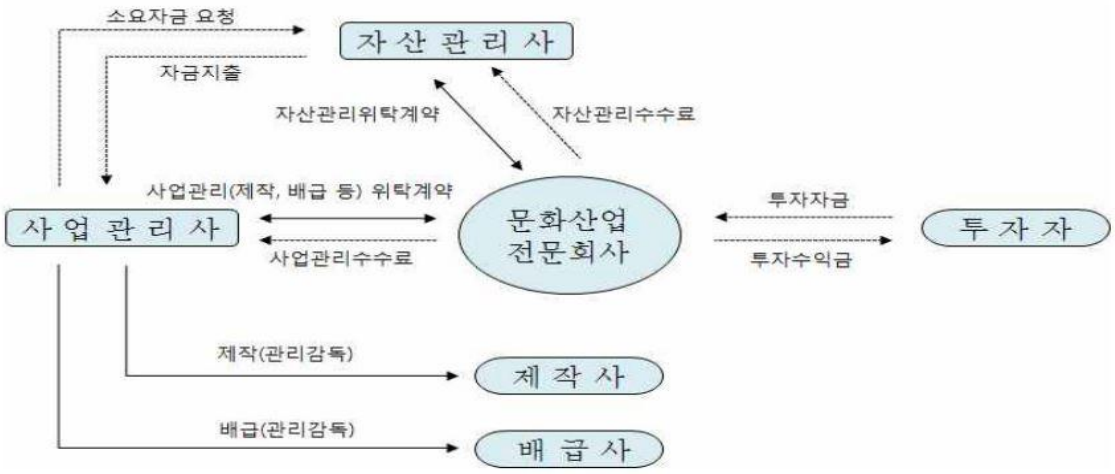

자료: 「문화산업전문회사 실무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

---

2)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일반 법인과는 달리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Paper Company로서 프로젝트의 개시와 함께 출범하여 프로젝트 완성과 더불어 해산함.

3) 추노·시크릿가든·태양의 후예·이태원 클라쓰 등의 콘텐츠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제작된 바 있음.

4)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투자의 투명성 확보 및 자금조달의 다변화, 제작사와 프로젝트의 분리를 통한 프로젝트 투자자금 흐름의 투명화, 자금 및 회계의 독립성과 안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기존 투자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자금 및 회계를 통합 관리함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의 자금이 다른 프로젝트 또는 회사 전체의 자금과 혼합되어 자금흐름의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았음.

이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자금 조달에 있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 자금이 해당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의 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존재하였음.

한편,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는 매년 1회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기준 321개의 전문회사가 운영 중임.(김성원의원안)

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인철의원안, 이건태의원안, 천하람의원안, 김선교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신동욱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정성호의원안, 김승수의원안, 정연욱의원안, 임오경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6)	○ 적용기한 연장 또는 폐지
○ 공제대상: 다음 어느 하나의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내외 발생비용 -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 영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 공제대상: 개정안별 상이
○ 공제율: ①(기본공제)+②(추가공제) - ①: 대 5%, 중견 10%, 중소 15% - ②: 대·중견 10%, 중소 15% *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 공제율: 개정안별 상이
○ 공제시기: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 공제시기: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 (김선교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신동욱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정

현 행	개정안
	연욱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2029. 12. 31. (윤준병의원안, 김승수의원안) 2030. 12. 31. (조인철의원안, 임오경의원안) 2035. 12. 31. (천하람의원안) 2040. 12. 31. (김성원의원안) 영구 세액공제 제도화 (이건태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김성원의원안) 2026. 1. 1. (조인철의원안, 천하람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신동욱의원안, 정성호의원안, 김승수의원안, 임오경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공포 후 6개월(이건태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정연욱의원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제25조의7)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공제대상: 개정안별 상이
○ 공제율: 3%	○ 공제율: (현행과 같음)
○ 공제시기: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공제시기: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 (김선교의원안, 정연욱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2029. 12. 31. (윤준병의원안) 2030. 12. 31. (조인철의원안)

현 행	개정안
	2040. 12. 31. (김성원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김성원의원안) 2026. 1. 1. (조인철의원안, 김선교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공포 후 6개월(정연욱의원안,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 조인철의원안 2025. 1. 14. 발의(의안번호 7495), 이건태의원안 2025. 2. 11. 발의(의안번호 8072), 천하람의원안 2025. 2. 19. 발의(의안번호 8290), 김선교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35), 민형배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28), 윤준병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30), 신동욱의원안 2025. 3. 27. 발의(의안번호 9409), 김성원의원안 2025. 5. 9. 발의(의안번호 10436), 정성호의원안 2025. 6. 10. 발의(의안번호 10694), 김승수의원안 2025. 6. 25. 발의(의안번호 11073), 정연욱의원안 2025. 6. 26. 발의(의안번호 11105), 임오경의원안 2025. 7. 8. 발의(의안번호 11354), 박성훈의원안 2025. 8. 21. 발의(의안번호 12301),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3025), 조승래의원·김승수의원안 2025. 10. 15. 발의(의안번호 13606)

□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첫째, 영상콘텐츠산업의 특성상 콘텐츠가 기획되어 제작에 착수하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수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일몰기한을 충분히 연장할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 출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둘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본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업당 연평균 8억원 이상의 제작비 투자 증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부가가치 유발액은 1,623억원, 순세수 감소액은 1,270억원으로 추정되어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음.[5)]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개 제도는 영상콘텐츠[6)] 제작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다른 업종[7)]의 특수목적회사 또는 영상콘텐츠 외 공연, 전시, 음악과 같은 다른 문화산업과의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5) 한국콘텐츠진흥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효과분석', 2025. 2.

6)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나.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7)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장르로는 방송, 영화, 에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외에 공연, 전시, 음악, 게임, 융복합, 만화, VR 등 다양한 장르가 있음.

둘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